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3. 12. 29. 조례 제3576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안양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방연마스크"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
 - 나.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
 - 2. "안전교육"이란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.
- 제3조(방연마스크의 비치권장)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안양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 - 1. 시 청사(시 직속기관, 사업소 등 포함)
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
 - 3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 - 4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
 - 5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 - 6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 - 7. 백화점, 대형마트, 공연장, 지하철역, 숙박시설, 박물관, 미술관 등 다중이용

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시설

- 8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
- 9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- 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- 제4조(안전교육 지원 등) ① 시장은 화재발생 시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홍보 등) ① 시장은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를 갖추 도록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, 안전교육,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소방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6조(예산지원) 시장은 제3조의 시설 중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·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